

대법원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, 주심 대법관 김재형)은 2018. 4. 19.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**상고를 모두 기각**하여, 전 국가정보원 원장 및 간부들이던 피고인들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물 등을 작성한 행위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**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).

피고인 원○○, 이○○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창석,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음.

1. 사안의 내용¹⁾

가. 정치관여 활동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원○○은 전 국가정보원장, 피고인 이○○은 전 국가정보원 3차장, 피고인 민○○은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직속 심리전단장이었던 사람임
-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재직 기간이던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, 찬반 클릭, 트위터(이하 통틀어 '사이버 활동'이라 합니다)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나 집권여당을 찬양·지지하고 야당이나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비방·반대하

1) 전 국가정보원장 원○○, 3차장 이○○, 심리전단장 민○○가 관여된 이른바 '국가정보원 댓글 조작'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임.

는 의견을 대량으로 유포함

나. 위 공소사실에 대한 사건의 경과

- 제1심(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외) :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,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(피고인 원○○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, 피고인 이○○, 피고인 민○○에 대해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)
- 환송 전 항소심(서울고법 2014노2820) : 제1심판결 파기,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일부 유죄,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(피고인 원○○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, 피고인 이○○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, 피고인 민○○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)
- 파기환송심(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) : 환송 전 항소심판결 파기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함 (핵심 증거 중 일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임. 이를 토대로 사이버 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고, 사실이 불확정 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함)
- 환송 후 항소심(서울고법 2015노1998) : 제1심판결 파기, 환송 전 항소심에 비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일부 유죄,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더 좁은 범위에서 일부 유죄 (피고인 원○○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, 피고인 이○○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6월, 피고인 민○○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6월)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환송 후 항소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중 일부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거나,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
- 이를 전제로,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됨
 - 특히 피고인 원○○, 피고인 이○○은 국가정보원의 원장 또는 상급 간부로서 사이버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, 각각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

나. 다수의견(11명) :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→ 상고기각

-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를 때 실행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음
 -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전체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순차적·암묵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함
 -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할 의사를 갖고, 범죄 실행의 중요한 일부 기능을 분담하였다면 실행행위자와 함께 공범이 될 수 있음
 -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,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해 증명할 수 있음
-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업무수행의 체계,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모습과 방법,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행행위

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

- 국가정보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서, 피고인들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
 - 직원들은 원장과 상급자들로부터 순차로 하달 받은 업무상의 지시·명령에 복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, 처리 결과를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함
 - 사이버팀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배경으로 주어진 업무 형태로 조직적·계획적으로 이루어짐
 - 사이버팀 직원들이 업무로 수행한 사이버 활동을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음
- 피고인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에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음
 - 피고인 원○○은 국가정보원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집권여당의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야당 또는 그 소속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데, 이러한 회의석상에서의 지시는 사이버팀 직원들의 업무지침이 됨
 - 피고인 원○○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고,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의 조직을 확대·개편하기도 하였음
 - 피고인 원○○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 든 후 정치권 등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·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전과 같이 집권여당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함
 - 피고인 민○○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에 대해 직접 지시, 감독하고 활동 내역을 보고받음으로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음
 - 피고인 원○○, 피고인 이○○은 부하 직원인 피고인 민○○로부터 사이버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, 그 업무 방향에 대해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민

○○를 거쳐 사이버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

다. 반대의견(2명) :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→ 파기환송 의견

▣ 피고인 원○○, 피고인 이○○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

- 피고인 민○○와는 달리, 피고인 원○○, 피고인 이○○에 대해서는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,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음
- 다수의견이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한 것임

▣ 위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다른 사정이 있음

- 피고인 원○○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음
-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고, 오히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

라.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하였음

▣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국가정보원이 국정 홍보라는 명목 하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, 댓글, 찬반클릭, 트위터 등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 등 반대 세력을 비방함으로써, 당면한 선거에서 집권여당 및 그 소속의 대통령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사안임